

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-160호

「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」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10월 30일

대전광역시의회 의장

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1. 제안 이유

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의 시설 중 학습관이 전시실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센터 입주 작가의 자격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.

2. 주요 내용

- 가. 학습관의 용도변경에 따라 시설, 기능, 휴관,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(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).
- 나.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작가의 자격 조건에 나이 제한이 없도록 규정함(안 제8조).

3. 의견제출

- 가.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의견제출 사항
 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 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)
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)
(전화 042-270-5124, FAX 042-270-5029, E-mail : cmdjyou@korea.kr)
- 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.

제4조제4호를 삭제한다.

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·외 미술작가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시장”을 “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시설) (생 략)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<u>학습관</u></p> <p>6. (생 략)</p>	<p>제3조(시설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기능) (생 략)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<u>시민과 학생을 위한 학습공간 지원</u></p> <p>5. ~ 6. (생 략)</p>	<p>제4조(기능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휴관) ① <u>학습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.</u></p> <p>② <u>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1월 1일</p> <p>2. <u>설날 전날, 설날, 설날 다음날</u></p> <p>3. <u>추석 전날, 추석, 추석 다음날</u></p> <p>4. <u>월요일. 다만,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</u></p> <p>③ <u>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센터의 운영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학습관을 임시휴관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시휴관일 3일전에 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제6조(이용시간) ① <u>학습관의 이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
용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학습관의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장 또는 단축 실시 3일전에 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입주작가) ① ~ ② (생략)

③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의 국내·외 미술작가
2. 센터 프로그램에 적합한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·외 미술작가

제10조(프로그램) 센터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따로 정한다.

제8조(입주작가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·외 미술작가로 한다.

제10조(프로그램)-----

---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--

관계법령

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[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

발 의 의 원 명 단

연 번	발 의 의 원	시 명	비 고
1	백혜연	백혜연	
2	박재현	박재현	
3	유현영	유현영	
4	박상숙	박상숙	
5	박희진	박희진	
6	박희진	박희진	
7	김정서	김정서	
8	김원희	김원희	
9			
10			
11			
12			
13			
14			
15			